#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7

발의연월일: 2020. 12. 4.

발 의 자:권칠승·남인순·박성준

박완주・박 정・송옥주

양정숙 • 이규민 • 이원욱

전용기 · 정청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화성시의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시·군 법원조차 없어 화성시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음.

한편, 시흥시, 파주시 등의 인구가 각각 47만 3,682명, 45만 4,040명으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 50만이상의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원 설치의 원칙을 제시하고화성지원, 시흥지원, 파주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 법률 제 호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란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란 및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란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지원	파주시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	화 성 시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시 흥 시

별표 2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란 및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

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	의정부	고양파주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외에 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고양시
		남양두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수원	수원		수원시·오산시·용인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화성시·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 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 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성남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여주	이천시·여주시·양평군
		평택	평택시·안성시
		안산	안산시·광명시
		안양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화성	화성시
		시흥	시흥시

별표 7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지 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원		용 인	경기도	용인시
		오 산	경기도	오산시
	성 남	광 주	경기도	하남시・광주시
	여 주	양 평	경기도	양평군
	여 주	이 천	경기도	이천시
	평 택	안 성	경기도	안성시
	안 산	광 명	경기도	광명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202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 중 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② (생 략)	제2조(설치) ①・② (현행과 같	
	음)	
<u>&lt;신 설&gt;</u>	③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	
	에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원	
	<u>칙으로 한다.</u>	